서울특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17년 4월 26일 교 육 위 원 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4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7년 4월 6일

3. 상정일자

○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17년 4월 26일 상정·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정병익)

1. 제안이유

- O 2017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감소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정원 감축
- 노사협력담당관 정원 책정을 위해 교육부에 직위변경 승인을 받아 일 반직4급 1명을 증원하고, 교육연수원 행정지원과장 정원인 일반직 4·5급 1명을 감축

2. 주요내용

- O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감축(안 제2조): 감 67명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감축
 - : 감 67명 (6.714명→6.647명)
-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총계 감축: 감 67명 (7.179명 → 7.112명)
 - : 일반직 정원 감축: 감 67명 (6,716명 → 6,649명)
 - · 4급: 증 1명 (37명 → 38명)
 - · 4·5급: 감 1명 (7명 → 6명)
 - · 5급 이하: 감 67명 (6,636명 → 6,569명)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737호로 제출되어 2017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2017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감소에 따른 일반직공 무원 정원 감축에 관한 사항과 '노사협력담당관' 신설에 따른 일반직공 무원 정원 조정 필요성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2017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에 따른 정원 감축(안 제2조)

-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부가 「2017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확정 산 정 통보」(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1031, 2017.2.28.)를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기존 7,179명에서 7,112명으로 변경하여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을 67명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부가 확정 통보한 일반직 지방공무원 총 액인건비 기준인원 6,652명 중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 5명을 제외한 6,647명을 정원관리 대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¹) 따른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표] 2017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단위: 명)

구분			교-	육부 확정인	원					
			2016년	2017년	증감	2016년	2017년	증감	비고	
일반지방 공무원	정원 관리	산식인원	6,715	6,647	△68	6,715	6,647	△68		
		행정수요	4	5	+1	4	5	+1		
		소계	6,719	6,652	△67	6,719	6,652	△67		
	현원 관리	결원보충	17	20	+3	17	20	+3		
		계	6,736	6,672	△64	6,736	6,672	△64		
교육전문 직원		산식인원	460	454	△6	458	458	0		
	정원 관리	정원 관리	행정수요	2	2	0	2	2	0	
		소계	462	456	△6	460	460	0		
	현원 관리	결원보충	10	11	+1	12	12	0		
	계		472	467	△5	472	472	0		

¹⁾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다만 교육적문직의 정원관리 대상의 경우 교육부 확정인원(456명)보다 교육청 운영인원(460명)을 4명 많게 책정하고 있으나, 인력운영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인건비는 463억 1천 7백만원으로 교육부가 확정 통보한 교육전문직 인건비 479억 9천 3백만원 보다 오히려 16억 7천 6백만원이 적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노사협력담당관 설치에 따른 직급별 조정(안 별표3)

- 동 일부개정조례안 [별표3]은 본청 일반직 4급 정원을 기존 26명에서 27명으로 1명 증원하고 4·5급 정원을 기존 7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원 조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736호)의 개정에 따라 '노사협력담당관'이 설 치될 경우 그에 따른 직급별 조정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입 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동 직급별 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지방교육행정 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2에²) 따라 이 미 4급 이상 정원 책정에 대해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교 육부 지방교육자치과-1135, 2017.3.6).
- 따라서 안 [별표3]과 같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서울특별 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²⁾ 제15조의2(정원 책정의 승인) ① 교육감은 일반직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정원 감축 및 직렬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없음.

₩.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179"를 "7,112"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6,714"를 "6,647"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 계	7,112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6,649				
2 · 3급	1		1		
3급	9		9		
3 · 4급	3		3		
4급	38		27	11	
4 · 5급	6		6		
5급 이하 소계	6,569				
전문경력관 소계	9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2				
5급상당 이하 소계	2				
특정직 계	460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0		28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410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제2조(정원의 총수)											
감(이하 "교												
로 두는 저												
는 7,179명	 7,112명											
 와 같이 구												
1.「지방교육		•	ŀġŀ ţ	범륙 ₍)	제29	· 1. (현행과 같음)						
조의3제1					•	_,	(L 0		」 /			
의회 사득			_	ᅵᄅᄀ	근기							
		_	_	<u></u> ላ ጋ] ਹ	ւ ու	9						
2. 본청·교			•		_ , ,	2						
공립의	•											
따른 공목	무원으	정위	원은 .	제외형	한다)							
<u>6,714명</u>						<u>6,647명</u>						
3. 교육전문	심직원	정원	460)명		3. (현행과 같음)						
[별표3] 정원	실의	단위	기관빌	별 직	급별	[별표(3] (현호	행과	같음)			
정원(제4조 편	반련)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공립의 사무처 기원청 학교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계	<u>7,179</u>					총	계	7,112				
정무직 계	정무직 계 1		정무	직 계	1							
	교육감 1 1				(در (م	교육감	1		1			
일반직 계 2·3급	6,716 1		1			일반	직 계 2·3급	6,649 1		1		
	3급 9 9			- 2·3 _日 - 3급	9		9					
3 · 4급 3 3			3 · 4급	3		3						
4급 <u>37</u> <u>26</u> 11					4급	<u>38</u>		<u>27</u>	11			
4·5급 7							4·5급	<u>6</u>		<u>6</u>		
5급 이하 소계 <u>6,636</u>							5급 이하 소계 6,569					

	개 정 안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구	보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전문경력관 소계	9					전문경력	력관 소계	9				
연구사 소계	14					연구	'사 소계	14				
별정직 계	2					별정	직 계	2				
5급상당 이하 소계	2					5급싱	남 이하 소계	2				
특정직 계	460					특정	직 계	460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0		28	22		4급 / 장학관· 고	상당 이상 교육연구관	50		28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	410					5급성 장학관·교 및 정학사	남 이하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410				